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12
------------	--------

제출년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목적·기능상 위원회가 필요하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어 조례개정을 통해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회의 소집규정을 안전이 발생하면 즉시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3항).
- 나.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위촉위원의 임기(2년, 연임 가능) 및 해촉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2조).
- 다. 위원회의 실무사항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도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3조제4항), 위원의 임기(2년, 연임 가능) 관련규정 삭제(안 제5항)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7. 16. ~ 8. 5.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20. 8.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25인”을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적위원”을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보건행정과장”을 “의약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에 규정된 사항 중”을 “제9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마포구민</u> (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마포구민</u> ----- ----- ----- ----- ----- ----- ----- ----- -----. -----.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구민의 모든 생활환경</u> 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 ----- <u>서울특별시</u> <u>마포구민</u> (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모-----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u>1인을 포함한 25인</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며</u>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1명을 포함한 25명</u>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u>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⑨ (생략)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 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④ -----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 ----- ----- ----- -----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명 ----- ----- 의약과장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제9조에 규정된 사항 중 실무에 관한 사

<삭 제>

제1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

----- 10명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9조 각 호에 따른 -----

항을 심의한다.

<신 설>

④ (생략)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생략)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보건소 의약과 최민건
연락처	02-3153-9883